

이스트스프링 단기 국공채 공모주 알파 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펀드코드: AV694]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채권과 공모 기업주식에 투자하여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공모주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이스트스프링 단기 국공채 공모주 알파 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p>1.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90% 이하를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 비교지수(벤치마크) : (KIS국고채6M~1Y) 90% + KOSPI지수 5% + Call 5%</p> <p>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2. 투자전략</p> <p>◆ 채권 운용전략</p> <p>[주요 투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 국공채, 통안채, 신용등급 AA- 이상 은행채, 신용등급 AA- 이상 회사채 유동성 자산: 신용등급 AA- 이상의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신용등급 A2- 이상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p>[주요 운용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재산의 90% 이하를 국내 국공채 및 신용등급 AA-이상의 회사채,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신용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상대가치 투자 (Relative Value Tra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 공사채, 회사채 등 각 채권 섹터별로 기대수익률을 분석·비교하여 리스크 대비 기대수익률이 높고 저평가된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고평가된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합니다. 특히, 재무지표를 기반으로 한 회사채 평가 시스템(Credit Valuation System)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회사채에 투자합니다. 듀레이션※ 관리 (Duration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드가 목표로 하는 듀레이션의 일정 범위 내에서 펀드 듀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장금리 변동에 대응합니다. 특히, 목표 듀레이션을 1년 미만으로 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제어합니다. <p>※ 듀레이션(Duration)이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서, 금리가 변동하는 데에</p>

따른 채권가격의 위험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 주식 운용전략

[주요 투자대상]

- 주식: 공모주 등을 포함한 국내주식

[주요 운용전략]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공모주를 포함한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가. 공모주 투자전략

- 공모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과 함께 산업 분석 및 기업의 경쟁우위를 고려한 벤류에이션에 근거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별합니다. 특히, 철저하게 분업화된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간 협의를 바탕으로 수요예측 참여 여부 및 참여가격, 의무보유확약 등을 결정합니다.
- 공모 가격 및 유동성 등을 정밀분석하여 투자참여에서 투자종료까지 각 단계별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점검한 후 공모에 참여합니다.
- 확약 참여종목의 경우, 확약 종료 시점 이후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산업 내 경쟁상황, 지속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를 고려합니다.
- 미확약 참여종목은 상장 이후 시장 추이에 따라 매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및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없음	1.3850	0.90	1.18	1.3915	143	290	443	766	1679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 의 0.7% 이내	0.8850	0.40	0.80	0.8915	161	255	352	560	115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없음	0.9350	0.45	0.81	0.9350	96	196	299	520	1153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납입금액 의 0.35% 이내	0.6850	0.20	0.62	0.6850	105	178	254	415	88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 P2(연금저축))	없음	1.0250	0.54	-	1.0250	105	214	328	568	125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 P(퇴직연금))	없음	1.1150	0.63	-	1.1150	114	233	356	617	1363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가 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클래스 A형과 클래스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5개월, 그리고 클래스 A-E형과 클래스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p>							
주요투자 위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원본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td></tr> <tr> <td>시장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회사채를 포함한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에 투자 하며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body> </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회사채를 포함한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에 투자 하며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회사채를 포함한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에 투자 하며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공모주투자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가운데 하나인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body> </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모주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가운데 하나인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모주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가운데 하나인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매입 방법</th><th>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h><th>환매 방법</th><th>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h></tr> </thead> <tbody> <tr> <td>환매 수수료</td><td>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td><th></th><th></th></tr> </tbody> </table>	매입 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매입 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기준가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정방법</th><th>-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h></tr> </thead> <tbody> <tr> <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body> </table>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td></tr> <tr> <td>수익자</td><td>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td></tr> </tbody> </table>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p>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p>							
주요투자 위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원본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td></tr> <tr> <td>시장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회사채를 포함한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에 투자 하며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body> </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회사채를 포함한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에 투자 하며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회사채를 포함한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에 투자 하며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공모주투자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가운데 하나인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body> </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모주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가운데 하나인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모주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가운데 하나인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매입 방법</th><th>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h><th>환매 방법</th><th>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h></tr> </thead> <tbody> <tr> <td>환매 수수료</td><td>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td><th></th><th></th></tr> </tbody> </table>	매입 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매입 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기준가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정방법</th><th>-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h></tr> </thead> <tbody> <tr> <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body> </table>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td></tr> <tr> <td>수익자</td><td>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td></tr> </tbody> </table>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p>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p>							
주요투자 위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원본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td></tr> <tr> <td>시장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회사채를 포함한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에 투자 하며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body> </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회사채를 포함한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에 투자 하며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회사채를 포함한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에 투자 하며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공모주투자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가운데 하나인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body> </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모주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가운데 하나인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모주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가운데 하나인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매입 방법</th><th>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h><th>환매 방법</th><th>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h></tr> </thead> <tbody> <tr> <td>환매 수수료</td><td>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td><th></th><th></th></tr> </tbody> </table>	매입 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매입 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기준가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정방법</th><th>-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h></tr> </thead> <tbody> <tr> <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body> </table>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td></tr> <tr> <td>수익자</td><td>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td></tr> </tbody> </table>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대표번호: 02-2126-3500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eastspring.com.kr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조좌																	
효력발생일	2021년 11월 30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s://www.eastspring.com.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및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p>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 <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수수료 선취(A)</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판매 수수료</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그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입니다.</td> </tr> <tr> <td>온라인(E)</td> <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판매경로</td> <td>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 </tr> <tr> <td>개인연금(P2)</td> <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퇴직연금(P)</td> <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펀드, 전문투자자 등(F)</td> <td>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랩(W)</td> <td>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그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입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투자자 등(F)	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그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입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투자자 등(F)	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 2 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내 가.(2) 종류별 가입자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s://www.eastspring.co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eastspring.co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eastspring.com/kr>)